

[별표 1의 2]

측정항목의 단위, 환산기준 등

(제10조 제2항, [별표 1] 관련)

1. [별표 1]의 각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
a) CO₂ 배출량 표시 환산기준 : 1Wh=0.425g

b) "1시간소비전력량" 또는 "1회세탁(세척)소비전력량"은 Wh를 단위로 한다. 단, 냉동기는 kWh를 단위로 한다.

c) "1시간사용시CO₂배출량" 또는 "1회세탁(세척)시CO₂배출량" 환산 값은 g을 단위로 하고 1시간소비전력량(Wh) 또는 1회세탁(세척)소비전력량(Wh)을 먼저 산출한 후 "1시간소비전력량×0.425" 또는 "1회세탁(세척)소비전력량×0.425"로 구한다. 단, 냉동기는 kg을 단위로 한다.

d)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 표시 환산기준 : 1kWh=160원(단, 삼상 유도전동기, 냉동기, 공기압축기, 펌프는 1kWh=77원, 전기냉방기, 전기냉난방기, 전기온풍기, 전기스토브는 [별표 1]에서 정한 단가 적용).

e) "연간소비전력량" 또는 "월간소비전력량"은 kWh를 단위로 한다. 단, [별표1]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f) "연간에너지비용" 또는 "월간에너지비용" 환산값은 원을 단위로 하고 연간소비전력량(kWh) 또는 월간소비전력량(kWh)을 먼저 산출한 후 "연간소비전력량×160원(삼상유도전동기, 냉동기, 공기압축기, 펌프는 연간소비전력량×77원)" 또는 "월간소비전력량×160원(전기냉방기, 전기냉난방기, 전기온풍기, 전기스토브는 [별표1]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)으로 구한다. 이때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(ex : 75,000원)로 표시한다.